OPEN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용금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발 간 등 록 번 호
11-1240245-000014-10

Population
Family & Household
Health
Education
Labor
Income & Consumption
Culture & Leisure
Housing & Transportation
Environment
Safety
Social Cohesion

한국의 사회동향 2020

Korean Social Trends 2020

http://sri.kostat.go.kr

통계청
통계개발원

코로나19 이후 내·외국인 출입국 및 외국인의 국내 체류 현황 변화

정기선 (서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 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화된 2020년 2월부터 내·외국인의 출입국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출입국자는 2019년 월평균 780만 명에서 2020년 4월에는 20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
- 2020년 1–4월 중 내국인은 출국자보다 입국자가 많았으며, 외국인은 3월까지는 출국자가 많다가 4월에 들어와 입국자가 더 많아졌다.
- 코로나19로 인해 출입국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학, 가족결합 및 방문 목적의 외국인 입국은 2019년의 20–50% 내외 수준으로 허용되고 있으며, 단기 관광이나 방문 목적은 99% 이상 감소하였다.
- 코로나19로 인해 단순노무 외국인력도 2020년 4월 현재 전년 동월 대비 15% 정도만 입국하여 인력수급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는 국내 외국인력 중 체류기간 만기도래자의 기간연장 등으로 대응하고 있다.
- 매년 증가하던 국내 체류 외국인 규모가 2019년 12월 252만 명에서 2020년 4월 218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장기체류 외국인보다 단기체류 외국인의 감소에 기인한다.
- 코로나19 발생 이후 불법체류 외국인이나 난민 신청자 증가추세가 약간 줄어들기는 했으나 그 폭이 크지는 않다.

2019년 12월에 중국 우한에서 신종바이러스(COVID-19) 발생을 확인한 지 한 달이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도 첫 확진자가 나왔다. 그 후 코로나19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급속도로 확산되었다. 2020년 1월 말 전 세계적으로 1만 명이 안 되던 누적 확진자가 3월 초 10만 명, 4월 초 100만 명, 6월 말 1,000만 명, 그리고 7월 23일 1,500만 명을 넘었으며, 누적사망자도 7월 20일 60만 명을 넘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3월 11일에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진행되고 있음을 공식 확인했다. 3월 중순에 접어들면서 많은 국가들이 해외로부터 코로나19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봉쇄, 국제선 항공 운항 중단, 해외 유입 내·외국인 격리조치 등을 취하기 시작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국제 인구이동은 극도로 위축되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따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국제인구이동의 변화를 내·외국인의 출입국 변화, 외국인의 국내 체류 현황 변화를 통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이러한 국제인구이동에 변화를 가져오게 한 배경이 된 코로나19에 대한 출입국 및 외국인 체류 관리적 측면에서의 정책적 대응을 살펴보는 것부터 시작하고자 한다. 이 글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월보)」, 「항공통계」 등을 활용하였다.[1)]

1) 다만 이 글은 2020년 7월에 작성되었으며, 이 시점에 발표된 가장 최근의 관련 당국의 조치들과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출입국 및 체류관리정책 대응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들이 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매우 폐쇄적인 출입국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선별적 입국제한과 해외입국자에 대한 철저한 검역으로 대응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개방성을 유지하고자 하였다(유민이·이창원, 2020).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관리 차원의 대응에서 외교부는 출국하는 국민들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법무부에서는 내·외국인 입국 및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체류관리를 주관한다.

외교부는 2020년 1월 23일 중국 우한시에 대해 여행경보 2단계(여행자제), 후베이성 전역 여행경보 1단계(여행유의)를 발령, 1월 25일에는 후베이성 전역의 여행경보를 3단계(철수권고)로 상향조정 하였고, 1월 28일 전 중국지역(홍콩·마카오, 대만 제외) 여행자제(2단계) 경보를 발령했다. 2월 말부터는 여행경보 발령이 이탈리아 북부지역 2단계(2월 28일), 일본 전 지역 1단계(2월 29일), 2단계(3월 9일), 서유럽 및 중유럽 지역 36개국 2단계(3월 16일)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3월 23일에는 전 국가·지역 대상 여행경보를 1단계(3월 19일)에서 특별여행주의보로 격상하면서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 또는 연기를 당부하였으며, 이는 7월 말 시점까지 연장되고 있다.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확산에 많은 국가들이 3월 초부터 해외로부터의 외국인 유입을 막는 조치를 본격적으로 취하기 시작했다. 해외로부터 외국인 유입을 막기 위해 국경봉쇄, 입국 전면금지, 국제선 항공 운항정지 등 강력한 폐쇄조치를 취하는 국가부터 특정 지역 출발 혹은 경유자 입국제한, 입국 후 14일 격리조치, 건강진단서 제출 요구 등 제한적 개방조치를 취하는 국가도 있다. 외교부는 세계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자료를 수집하여 공지해주고 있는데, 6월 8일 149개 국가·지역이 해외입국자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였던 것이 7월 1일부터 일부 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완화되어 7월 9일 113개, 7월 25일 105개 국가·지역이 입국금지 조치를 취하고 있다(외교부, 2020).

국가들 간 국민의 이동은 상호주의적 성격을 갖는다. 상대 국가가 해당 국가 국민의 입국에 폐쇄적 조치를 취하면 이에 상응하여 상대 국가 국민의 입국도 제한을 받게 된다.

법무부에서는 2월로 접어들면서 제주무사증 발급을 일시 정지하고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 제한, 후베이성 관할 공관 발급 기존 사증의 효력도 잠정 정지했다(2월 4일). 또한 14일 내 후베이성 방문 모든 외국인의 입국을 제한하고 중국에서 출발해 국내에서 환승하는 무사증 외국인의 입국도 제한하였다. 3월 11일에는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모든 유효한 일본여권(외교, 관용, 일반여권 모두 적용) 소지자에 대한 사증면제 조치를 정지, 일본주재 대한민국 공관에서 일본국민에 대해 발급한 기존 사증효력을 잠정 정지하였다. 강화된 출입국심사와 검역을 받게 되는 특별입국절차 대상 국가도 중국 후베이(2월

4일), 홍콩·마카오(2월 12일), 일본(3월 9일), 이탈리아, 이란(3월 12일), 프랑스, 독일, 스페인 등 유럽 5개국(3월 15일), 유럽 전체(3월 16일), 그리고 3월 19일부터는 전 국가·지역으로 확대되었다(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홈페이지).

4월로 들어서면서 법무부는 4월 5일까지 발급된 단기비자(B1(사증면제), B2(관광·통과), C3(단기방문))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정지(단기취업(C4)비자는 제외)하였고,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의 국민(비자면제협정 국가 중 56개국, 무사증입국 가능 국가 중 34개국) 대상 무사증입국 잠정 정지[2], 신규 비자발급 시 진단서 및 격리동의서 제출을 의무화하는 등 보다 강화된 조치(4월 13일 시행)를 취하게 되었다.

〈표 I–5〉는 우리나라에 많이 들어오는 외국인들의 본국에서 취하고 있는 해외입국자 입국제한 조치를 보여준다. 우리나라의 출입국통계에서 내·외국인 출국자의 특성 및 행선지 등 출국 관련 정보가 거의 없기 때문에, 〈표 I–5〉를 통해 우리나라와 인적교류가 활발한 국가들의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대응을 간접적으로 가늠해볼 수 있다.

국내에 90일 이하로 체류하는 단기체류외국인 중 귀국항공편 운항 중단으로 출국하지 못하는 경우, 체류기간을 연장(1회 최대 30일)해주는 조치가 취해졌다(3월 3일). 법무부는 체류관리차원에서 국내에 장기 거주외국인(등록외국인과 거소신고 F–4동포) 중 체류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합법체류자를 대상으로 2월 24일 1차로 4월 30일까지 일괄 체류기간을 연장 조치해주었으며, 4월 9일에 2차로 4월 9일부터 5월 31일 기간 내에 체류기간이 만료되는 이들을 대상으로 최장 3개월(최장 8월 31일까지 유효)까지 재연장 조치를 취하였다(법무부, 2020).

〈표 I-5〉 국내 유입 주요 외국인 본국의 코로나19 대응 입국제한 조치, 2020

국가	일자	해외입국자 입국제한 조치
중국	3월 28일	기존 유효비자 및 외국인 거류허가증 소지자 입국 잠정 중단
일본	2월 27일	한국 대구,경북 청도 체류이력 외국인 입국 제한
	3월 9일	한국에 대한 사증(비자) 효력 정지 한국, 중국에서 입국자 14일간 격리조치
	4월 3일	입국전 14일 이내 한국 등 129개 국가/지역 체류 이력 외국인 입국금지
대만	3월 19일	외국인 대만 입경금지
미국(본토)	3월 19일	국무부 여행경보기준 2-4단계 해당국가(한국포함) 정규비자업무중단[1]
홍콩	4월 6일	모든 홍콩비거주자의 홍콩입국금지
베트남	2월 29일	한국인 대상 무사증 입국 임시 중단
	3월 12일	베트남계 한국인 및 그 가족 비자면제증 효력 중단
	3월 17일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발급 중지
	3월 22일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금지
태국	5월 26일	모든 외국인 및 무국적자 입국 금지
필리핀	3월 22일	모든 비자발급중단,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5월 3일	국제공항 모든 항공기 운행 전면 중단
말레이시아	3월 18일	모든 외국인 입국 금지
인도네시아	4월 2일	모든 외국인 입국 및 경유 금지
싱가포르	3월 23일	모든 단기방문객 입국 · 경유 불허
캐나다	3월 18일	미국인 제외 모든 외국인 입국금지

주: 1) 주한미국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정보임.
출처: 외교부,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현황", 2020.6.8., 2020.7.9.

2) 2019.7.18. 현재 사증(비자)면제협정 체결국가는 108개국이며, 이 조치가 적용되는 일반여권 비자면제협정 국가는 69개국임. 무사증입국 허용 대상 국가는 2018.9.1. 현재 48개 국가·지역임(법무부, 2020). 사증면제협정 및 무사증입국제도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유민이·이정우(2019) 참조.

코로나19의 여파로 각 국가가 취하는 내·외국인의 출입국 제한조치가 국제인구이동에 영향을 주지만, 동시에 국제선 항공기의 운항감축·운항정지가 국경을 넘는 인구이동을 직접적으로 제약한다. [그림 I-10]에서 보듯이, 최근 5년간 우리나라 전체 국제공항에 뜨고 내리는 국제선 항공기 편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었으며, 2020년 1월에는 4만 3,419편이었던 것이 코로나19의 영향으로 5월에는 1,908편으로 급감하였다.

[그림 I-10] 국내 공항의 국제선 항공기 운항 현황, 2016-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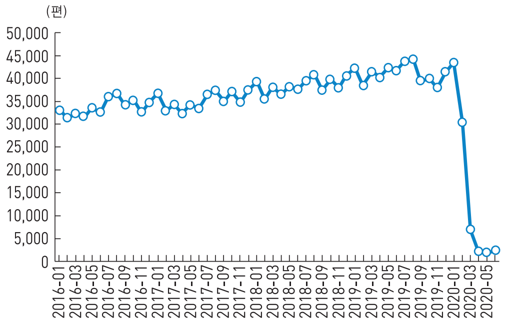

주: 1) 국제선의 여객기 기준 도착과 출발 운항편수의 합임.
출처: 한국항공공사, 「항공통계」, 각 연도.

해외유입자에 대한 입국제한조치, 국제선 항공기 운항 감편 또는 정지, 비싸진 항공료 등과 함께 입국 후 최소 14일 시설 또는 자가 격리 조치도 국제인구이동을 제약하는 요인이 된다. 대부분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해외입국자의 시설 또는 자가격리는 해외 활동을 위해 지불해야 하는 시간적·금전적 비용을 높여 국제이동을 억제하게 된다.

국내 출입국 동향 변화

2019년 한 해 동안 내·외국인 출입국자 수는 9,355만 명이었다. 내국인 출입국자가 5,780만 명(61.8%), 외국인은 3,575만 명(38.2%)이었다. [그림 I-11]에서 알 수 있듯이, 최근 5년간 내국인 출입국자는 매년 증가해왔으며, 외국인의 경우 약간의 등락은 있지만 대체로 완만한 상승 추세였다. 월평균 출입국자 수가 2015년 553만 명에서 2019년 78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며, 내국인 출입자가 482만 명, 외국인이 298만 명이었다.

[그림 I-11] 내·외국인 출입국자 추이, 2015-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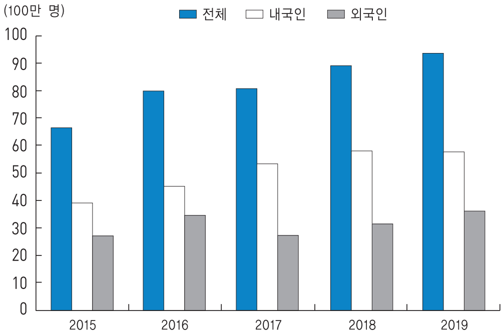

주: 1) 입국자와 출국자의 합임.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연보」, 각 연도.

2020년 1월은 아직 코로나19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아서 내·외국인 출입국자가 783만 명(내국인 509만 명, 외국인 274만 명)으로 2019년과 비슷한 수준이었다. 2월 들어서면서 내·외국인의 출입국자 수가 1월 대비 50% 이상 줄어들었

으며, 3–4월에는 그 수가 더욱 급락하였다. 내국인 입국자가 2월 130만 명에서 4월 11만 명 수준으로 떨어졌고, 출국자는 더 현격히 줄어 2월 106만 명에서 4월 3만 명으로 떨어졌다. 외국인의 경우 입국자가 2월 72만 명에서 4월 3만 명으로 줄어들었으며, 출국자는 2월 77만 명에서 4월 2만 명 이하로 떨어졌다(그림 I–12).

[그림 I–12] 내·외국인 출입국 현황, 20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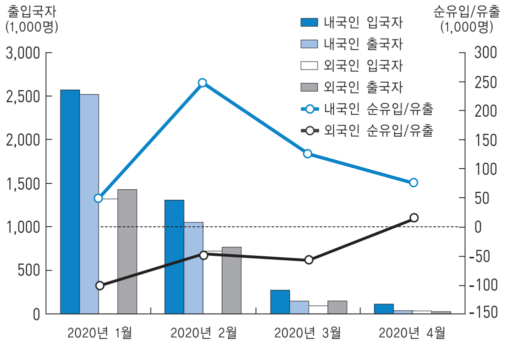

주: 1) 플러스(+) 값은 순유입, 마이너스(–) 값은 순유출임.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각 월.

코로나19가 본격화되면서 내국인은 2020년 1–4월 기간 내내 출국자보다 입국자가 많았던데 비해, 외국인은 1–3월까지는 입국자보다 출국자가 더 많다가 4월에 들어와 역전되었다. 3월 들어 내국인 출국자 수의 감소는 해외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염려로 여행자제, 세계 각국들의 외국인 유입 제한조치, 정부의 국민의 해외여행 취소나 연기 적극 권장, 그리고 실제 출국 항공기 감편 등의 결과이다. 반면, 우리나라 방역에 대한 국제사회의 호평과 국민적 신뢰로 유학 등으로 해외에 있던 국민의 귀국이 늘어 코로나19가 심화되면서 출국자보다 입국자가 더 많은 현상이 나타났다. 외국인의 경우, 코로나19 발생 초기에 중국 다음으로 국내 감염이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외국인의 귀국은 늘어났던 반면, 해외 송출국에서 자국민의 출국 제한, 항공기 결항 등으로 입국자는 현저히 줄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2월 초 제주무사증입국 정지, 4월 초 단기비자발급 잠정 정지도 외국인 입국자 감소에 큰 영향을 주었다.

[그림 I–13]에서는 외국인 입국자의 국적별 분포를 살펴보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을 크게 받고 있던 2020년 4월(3.5만 명) 외국인 입국자를 2018년 4월(135.4만 명)과 2019년 4월(165.9만 명) 자료와 비교하여 제시하였다. 2019년 4월 유입된 외국인의 출신 국적을 보면 중국(30.9%, 한국계 4.8% 포함), 일본(17.6%), 대만(7.0%), 미국(6.6%), 홍콩(4.5%), 태국(4.3%), 베트남(4.2%), 필리핀(4.1%) 순으로 많이 들어왔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심화된 2020년 4월에는 유입 외국인의 국적별 구성에 큰 변화가 있다. 즉, 2020년 4월에는 베트남(29.9%)이 가장 많이 들어왔고, 그다음으로 미국(19.8%), 중국(13.6%, 한국계 6.0% 포함), 인도네시아(5.5%), 필리핀(3.6%), 러시아(3.6%), 독일(3.0%) 순이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중국과 일본인 입국자가 전체 외국인의 약 50%를 차지했다면, 코로나19 이후에는 베트남과 미국인이 그러했다.

[그림 I-13] 외국인 입국자의 국적별 분포, 2018-2020

1) 2018, 2019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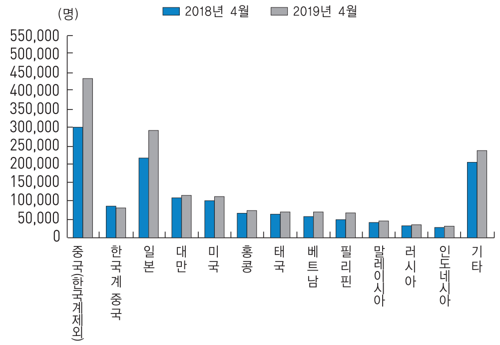

2) 2020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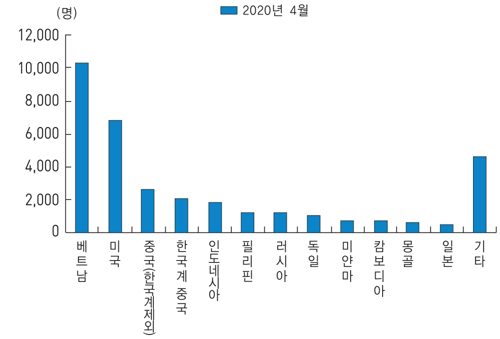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각 연월.

코로나19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내로 들어온 외국인들의 체류목적을 살펴보았다. 2020년 4월에 가장 많이 들어온 베트남인의 경우 유학 또는 어학연수(D2/D4) 목적이 51.7%로 가장 많았고, 가족방문·동거(F1) 23.4%, 결혼이민자(F6) 11.9% 순이었다. 미국인 입국자 중 49.2%가 승무원이었고, 관광·통과(B2)자 26.2%, 재외동포(F4)비자 동포 12.9%이었다. 중국인 입국자 4,685명 중 2,066명은 한국계 중국인으로 취업목적 (방문취업 H2) 55.0%, 재외동포(F4)비자 동포가 34.1%이었다. 중국인(한국계 제외)의 경우 유학 또는 어학연수(D2/D4) 목적이 42.5%로 가장 많았고, 단기방문(C3), 결혼이민(F6)과 가족방문동거(F1)가 31.6%정도 되었다. 독일인 입국자는 승무원이 93.2%이었으며, 필리핀과 인도네시아인 입국자는 승무원이 40-50%, 관광·통과(B2)가 25-35%이다.

〈표 I-6〉 외국인 입국자의 체류목적별 유입 분포, 2019-2020

체류기간	체류목적	비자유형	2019년 4월		2020년 4월		증감률 (%)
			입국자수(명)	구성비(%)	입국자수(명)	구성비(%)	
단기	무사증입국	관광 등(B1/B2)	887,520	53.5	4,044	11.7	-99.5
	방문	방문(C3)	487,191	29.4	1,088	3.1	-99.8
	취업	단기취업(C4)	2,378	0.1	112	0.3	-95.3
장기	취업	전문인력(E1-E7)	6,104	0.4	451	1.3	-92.6
		비전문인력(E9/E10)	15,248	0.9	2,227	6.4	-85.4
		비전문인력(H2)	20,171	1.2	1,138	3.3	-94.4
	투자경영	기업투자/무역경영(D8/D9)	3,758	0.2	174	0.5	-95.4
	유학	유학/일반연수(D2/D4)	13,523	0.8	7,150	20.7	-47.1
	결혼이민	결혼이민(F6)	11,808	0.7	2,023	5.9	-82.9
	가족결합	방문동거/동반(F1/F3)	11,198	0.7	3,174	9.2	-71.7
	재외동포	재외동포(F4)	48,084	2.9	2,003	5.8	-95.8
	장기거주	거주/영주(F2/F5)	17,329	1.0	669	1.9	-96.1
	기타	기타	134,543	8.1	10,291	29.8	-92.4
		전체	1,658,855	100.0	34,544	100.0	-97.9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각 연월.

코로나19로 인해 해외유입자 입국제한, 대폭 줄어든 항공편, 입국 후 시설/자가 격리 등 출입국 상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유학, 가족결합 및 가족방문 목적의 입국은 전년 동월 대비 20–50% 내외 수준으로 허용되고 있었다. 단기 관광 또는 방문 목적의 외국인 유입은 99% 이상 감소하였고, 장기 거주자, 재외동포(F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외국인의 유입도 95% 이상 감소하였다. 국내 노동시장에서 단순노무인력을 제공해주고 있는 외국인노동자(E9, E10)의 경우 2019년에 비해 15% 정도만 입국하였고, 전문인력과 단기취업인력도 5% 내외만 입국하여서 인력수급의 어려움을 예상할 수 있다(표 I–6).

국내 체류 외국인 현황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하여 외국인의 출·입국자 수가 현저히 줄어들었음을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2020년 4월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의 규모에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그림 I–14]에서 보듯이, 매년 증가하기만 했던 체류외국인 규모[3]가 2019년 12월 252만 명에서 2020년 4월 현재 218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장기체류 외국인이 약 2만 명 줄어든 데 비해, 단기체류 외국인은 33만 명 가까이 줄어들었다.

〈표 I–7〉은 단기체류 외국인의 수가 2019년 말 대비 2020년 4월에 40% 넘게 감소하였음을 보여준다. 법무부는 2020년 4월 초 단기비자 발급을 잠정 정지하면서 국내 노동인력부족

[그림 I-14] 체류외국인 추이, 2015–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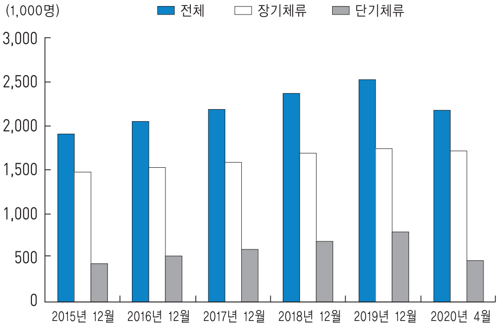

주: 1) 장기체류외국인 수=등록외국인 수+외국국적동포 거소신고자 수.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각 연월.

〈표 I-7〉 체류자격별 체류외국인 수, 2019–2020

체류기간	체류목적	비자유형	체류외국인 수(명) 2019.12	체류외국인 수(명) 2020.4	증감률(%)
단기	무사증 입국	관광 등(B1/B2)	453,294	252,134	-44.4
	방문	방문(C3)	256,696	132,881	-48.2
	취업	단기취업(C4)	1,645	948	-42.4
장기	취업	전문인력(E1-E7)	44,936	44,512	-0.9
		비전문인력(E9/E10)	294,358	282,088	-4.2
		비전문인력(H2)	226,322	214,856	-5.1
	투자경영	기업투자/무역경영(D8/D9)	8,261	7,998	-3.2
	유학	유학/연수(D2/D4)	181,945	167,449	-8.0
	결혼이민	결혼이민(F6)	131,034	132,988	1.5
	가족결합	방문동거/동반(F1/F3)	145,776	142,701	-2.1
	재외동포	재외동포(F4)	464,152	464,560	0.1
	장기거주	거주/영주(F2/F5)	196,962	199,857	1.5
	기타	기타	119,275	133,753	12.1
전체			2,524,656	2,176,725	-13.8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각 연월.

3) 법무부의 체류외국인 통계는 국내 체류 기간이 90일을 넘지 않는 단기체류 외국인과 90일 초과체류를 위해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과 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F4)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한다.

문제를 고려하여 단기취업비자인 C4를 예외로 하였음에도 이 비자로 들어와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 노동자가 2019년 12월 말에 비해 42.4%나 줄어들었다. 농축산업 부문에서 3개월 단기로 일하는 계절근로자들이 C4비자로 들어왔으며, 2020년에도 5,000명 가까이 들어올 예정이었으나 신규 유입에 어려움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장기체류 외국인 중에는 유학생이 2019년 12월 말 대비 8.0% 줄어들었고, 단순기능직 외국인노동자(비전문인력 E9, H2)는 약 5% 정도 줄어들었다. 반면, 결혼이민자(F6)나 거주(F2) 혹은 영주자격(F5) 외국인 그리고 재외동포(F4) 외국국적동포는 거의 변화가 없거나 2%도 안 되게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코로나19 이후 새로 유입되는 외국인이 매우 적음에도 국내에 장기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수가 크게 줄지 않은 것은 출국하는 외국인 수도 예년에 비해 크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체류기간 만기가 도래하는 등록 외국인이나 거소신고 외국국적동포의 체류기간을 8월 말까지 연장해주었으며, 고용노동부도 송출국의 외국인력 송출유예 조치, 항공편 감편 또는 중단으로 신규 외국인력 도입이 어려워 애로를 겪고 있는 사업장의 인력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체류기간 만료가 3개월 이내 도래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4월 14일부터 취업활동기간을 만료일로부터 50일 일괄 연장해주기로 하였다.

체류외국인의 국적을 보았을 때 2019년 12월 대비 2020년 4월 현재 그 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외국인은 한국계를 제외한 중국인(12.1만 명), 일본인(5.8만 명), 대만인(2.2만 명), 태국인(1.9만 명), 한국계 중국인(1.6만 명) 순이었다. 체류외국인 감소율로 보면, 일본인이 67.3%로 가장 크고, 말레이시아인(55.1%), 대만인(51.5%), 호주인(44.1%), 한국계 중국인을 제외한 중국인(30.3%) 순이다(그림 I-15).

[그림 I-15] 체류외국인 국적별 분포 및 증감, 2019-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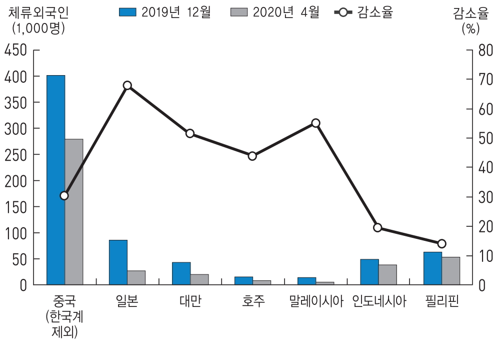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각 연월.

단기비자로 2020년 4월 현재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가운데 협정에 의한 사증면제(B1)비자 소지자 중 80.6%(15.8만 명)가 태국인이며, 단기방문(C3)비자 소지자는 한국계를 제외한 중국인(5.7만 명), 베트남(2.7만 명), 몽골(2만 명) 출신이 78.4%를 차지한다. 유학(D2)비자 소지자는 한국계 제외한 중국인(5.2만 명), 베트남(2만 명)이 64.6%를 차지하며, 어학연수(D4)는 베트남(3.7만 명)이 66.2%를 차지한다.

불법체류 외국인과 난민신청 현황

[그림 I-16]은 2018년 12월부터 코로나19로 인한 영향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2020년 4월까지 월별 불법체류 외국인 현황을 보여준다.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는 2008년 20만 명(불법체류율 17.3%, 체류외국인 115.9만 명)이던 것이 2016년에는 체류외국인이 200만 명을 넘었는데도 불법체류 외국인은 20.9만 명을 유지하여 불법체류율이 10.2%까지 낮아졌었다. 그 후 최근 5년간은 불법체류 외국인 규모와 불법체류율은 계속 상승하여, 2019년 12월 불법체류율은 15.5%(39만 명)이었다.

[그림 I-16] 불법체류 외국인수 및 신규발생 인원, 2018-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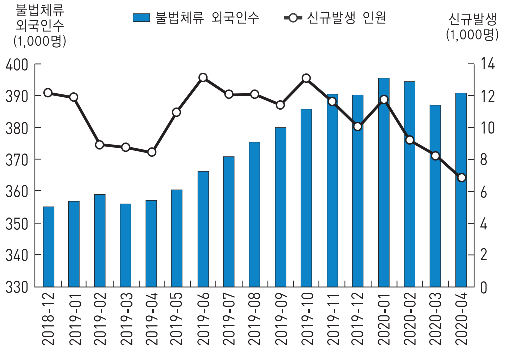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각 연월.

코로나19 발생 이후 신규 불법체류 외국인의 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20년 3월 5.9%, 4월 19.0%로 계속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2020년 4월 현재 불법체류 외국인은 39.1만 명으로 1월의 39.5만 명보다 약간 줄어들었을 뿐이다. 불법체류 외국인의 규모에는 큰 감소가 없음에도 전체 체류외국인 규모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불법체류율은 4월 현재 18.0%로 2008년 이후 가장 높아졌다.

〈표 I-8〉은 2019년 대비 2020년 1/3분기 난민신청자의 국적별 증감 현황을 보여준다. 2019년 한 해 동안 난민신청자 수를 3분기로 나누어 분기마다 동일한 수의 난민신청자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1분기 평균과 2020년 1-4월 난민신청자 수를 비교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 이후 난민신청자 수는 2019년 1/3분기 평균 5,151명보다 14.5% 감소한 4,404명이었다. 난민신청자의 출신 국가에 따라 난민신청자 수의 증감에 차이가 있는데, 중국인 난민신청자가 전년 1/3분기 대비 71.7% 감소해서 가장 많이 줄었고, 그 다음으로 파키스탄인이 50.6% 감소하였다. 반면 터키, 인도 출신 난민신청자는 10-20% 정

〈표 I-8〉 국적별 난민신청자 수, 2019-2020

	난민신청자 수(명)		증감률(%)
	2019년 1/3분기 평균	2020년 1-4월 누계	
중국	667	189	-71.7
파키스탄	263	130	-50.6
말레이시아	479	349	-27.2
카자흐스탄	745	559	-25.0
방글라데시	164	140	-14.5
러시아	943	927	-1.7
기타	1,463	1,617	10.5
인도	320	367	14.8
터키	107	126	18.1
전체	5,151	4,404	-14.5

출처: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20.4.

도 증가하였다.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공항만에서의 난민신청이 더 어려워졌음에도 난민신청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은 것은 국내 체류외국인의 난민신청이 늘어난 결과로 보인다.

맺음말

코로나19는 아직도 진행 중이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막기 위한 각국의 노력이 가장 강력하게 그리고 광범위하게 진행되었던 시기에 국내 출입국 및 체류외국인 동향 변화를 살펴본 것이다. 7월에 들어서면서부터 해외유입자 입국제한 등이 다소 완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확장일로에 있던 국제이주의 흐름이 전지구적 감염병 확산으로 잠시 멈춰서는 경험을 하게 된 것이다. 국내외를 불문하고 관광산업이 큰 충격을 받고 있으며, 외국인 노동력 의존도가 높은 산업에서의 인력부족 문제도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출입국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가족결합이나 방문, 유학, 인도적 사유로 인한 국제이동은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아직까지는 수개월에 거친 코로나19의 영향에 임시방편적 대응을 하고 있으나, 이것이 더 장기화 되거나 향후 반복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따라서 이번 코로나19로 인한 출입국 및 체류 관리상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목적의 외국인 유입과 체류관리방식을 재검토하여 출입국상 방역체계, 외국인력정책, 유학생 정책 등 이민정책적 관점에서의 장기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참고문헌

법무부 출입국 · 외국인정책본부. 2020.6.「사증발급 안내매뉴얼」.

법무부. 2020. “Announcement on Extension of Stay by Authority for Registered Aliens and F-4 Residents” 2020.4.17.

외교부. 2020.「코로나19 확산 관련 각국의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현황」. 2020.6.8., 2020.7.9. 2020.7.25.

유민이·이정우. 2019.「무사증 입국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 이민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No. 2019-04.

유민이·이창원. 2020. “코로나19로 본 한국형 ‘감염병 대응’ 출입국관리 모델.”「이민정책연구원 이슈브리프」 No.2020-02.